<첨부 3>

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기준

1. 인정범위

- 저소득층
 - 기초생활수급자, 최저생계비 150% 이하(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), 소득 1~3분위
- 취업취약계층
 - 졸업 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, 장애인, 여성가장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주자, 고졸자

2.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제출 서류 및 발급처

구분	제출서류 졸업생 및 휴학생	발급(확인)처	
기초생활수급자	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사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	
차상위계층 장애인	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· 장애수당, 자활급여, 한부모 가정 지원시업 대상자 	사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	
여성가장	-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확인서	국민건강보험공단	
차차상위계층	-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(서류제출일 기준 최소 12개월 이상) - 기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- 의료보험증 사본(급여 대상자 페이지)	국민건강보험공단 읍면동주민센터	
장기실업자 고졸미취업자	- 졸업증명서, 졸업예정증명서 - 4대보험 납입증명서(기준:졸업 후~지원시까지) - 대학(교) 제적, 자퇴증명	각대학,고등학교 국민연금공단 민원 24(인터넷)	
북한이탈주민	- 북한이탈주민확인서	시·군·구청	
결혼이주자	- 결혼이주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	읍면동주민센터	

<참고>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

○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(최저생계비 150%)이하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2014년 최저생계비	603,403	1,027,417	1,329,118	1,630,820	1,932,522	2,234,223	2,535,925
150%	905,105	1,541,126	1,993,677	2,446,230	2,898,783	3,351,335	3,803,888
보험료 (가입자분 2.945%)	26,655	45,386	58,714	72,041	85,369	98,697	112,025

※ 만 30세 미만은 부모까지 건강보험료 포함, 만 30세 이상은 단독 가구로 나왔을 경우, 해당 가구만 산출